

본 학회지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의 일부 재정지원에 의해 발간되었음.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에 관한 연구

이 윤 철*

Some Consider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in Korea

Yun-Cheol, Lee

〈目 次〉

Abstract	IV. 경제수역 설정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I. 서론	1. 일본의 입장 2. 북한의 입장 3. 중국의 입장 4. 러시아의 입장
II.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법적 고찰	V. 경제수역 설정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그 대책
1.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일반적 고찰 2. 경제수역의 법적 체제 3. 경제수역의 외측한계 4.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1. 경제수역 설정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2. 일본과의 관계 3. 중국과의 관계 4. 북한과의 관계 5. 러시아와의 관계
III.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에 대한 필요성	VI. 결 론
1. 항해 자유권적 측면 2. 자원 관할권적 측면 3. 환경 보호권적 측면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arch for reasonable and fair principles applicable to the delimitation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which is called the EEZ, hereinafter)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comprehensive study of maritime boundary,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Law of the Sea.

* 정희원,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동 대학 강사

So far, the sea has been exploited for activities such as fishery, transport and military strategy, and environmental policy and so on. From this time on, however, it becomes important to us as the major treasure-house of various resources which will be developed and used for diversified purposes. For these reasons, nowadays, more and more countries of the world are competing to secure waters as much as possible within their jurisdiction. And the regime of the EEZ was created as a result of this international trend. At last, it has been institutionalized as the 200-mile EEZ of a legal notion in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hich was adopted at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in Jamaica on December 10, 1982.

In adapting to this EEZ institution, Korea is faced with several complicated problems as it is bounded on three sides by the sea and all of its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the PRC, the DPRK, Japan, Russia, etc are less than 400 miles away between opposite countries. Therefore, when trying to delimit the boundary for the EEZ, it appears necessary to analyze applicable principles and rules of international law for delimitation mainly through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studies the trends of actual State practices and recent international precedents. It is hoped that such knowledge will enable Korea to secure sufficient resources and other sovereign rights without conflicting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concerned.

For the achievement of the above mentioned object, I analyzed the necessitie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EEZ in Korea, the difficulties and practices of Korea's neighbors, and the changes and forthcoming trends in Korea's relations with its neighbors concerned on the basis of the general explanation of the EEZ regime.

In conclusion, it is my opinion tha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EEZ delimitation which neighbor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applied reasonable and equitable principles considering the relevant circumstances which characterize the area definitely as well as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구 전 표면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에는 우리 인간이 아직 생각하지 못한 각종 자원이 산재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규칙적인 발달은 인류의 생활공간을 육지에서 해양으로 확대하게 했고 급증하는 인구 및 인간생활의 다양화는 육상자원의 한계성을 초래하였다. 이리하여 세계각국은 해양자원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장기적인 자원확보와 해양의 고도이용을 위하여 보다 많은 바다를 확보하려고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침예하게 대립하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인류는 해양에 의존하는 시대에 접어들

게 되었고, UN의 국제해양법회의에서도 해양에 부존되어 있는 자원의 확보가 주요의제로 다루어져 결국에는 경제수역이론이 비중을 가지고 등장하게 된 것이다. 즉 1982년 4월 30일 제3차 UN해양법회의에서는 바다의 헌법이라고 할수있는 「해양법협약」을 채택하였는데, 이 협약은 200해리의 베타적 경제수역을 총의(consensus)에 기초를 둔 법적 개념으로 수용함으로써 이를 제도화 하였다.

특히 자원이 빈약하고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라는 설정가상으로 북한과 적대관계에 있어 지정학적인 면에서 도서국가나 다름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라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양진출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인접한 해양에서의 자원개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기 최근에는

우리나라와 적대관계를 유지해 왔던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의 경제적 실리추구를 위해 우리나라와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은 정치 군사적인 분쟁에서 탈피하여 이제 새로운 경제 분쟁지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나라가 장차 주변 해역에서 경제수역을 선포할 경우 우리나라와 인접국가들과는 대부분 400해리 이내에서 서로 대향 또는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들 주변 국가와의 마찰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황해에서는 일본, 중국, 북한과 남해에서는 일본, 중국과의 문제의 소지가 있고 동해에서는 독도의 영유권문제 등에 관해 일본과의 분쟁의 소지가 내재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하에서 주변국가들과의 분쟁을 피하고 자원확보및 환경보호를 위해 우리나라가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제수역의 설정·선포에 관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에따라 주변국들의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장차 우리나라가 해양관할권의 분쟁발생시 어떻게 하면 실제 상황에 가장 합리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인가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범위를 우리나라 주변해역으로 국한시키고, 이로인한 주변국들의 반응및 우리의 대처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연안국의 외측에 인접한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미치는 수역을 말한다. 연안국이 이 수역내의 해면과 해저, 해상(sea-bed), 하층토(sub-soil)및 그 상부수역의 생물, 비생물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관리를 위한 주권적 관리및 바다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등 기타 경제적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territorial rights)를 가지며, 인공섬 시설물 등의 설치·사용과 해양의 과학적 조사및 환경보존 등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다. 이 수역에서는 연안국 이외의 타국도 이 수역에서의

항행의 자유, 상공 비행권및 관선부설의 자유를 향유하며, 일정한 조건하에 생물자원 개발에 참여할 수도 있다.

현재 러시아, 일본, 북한 등은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한 상태이나 우리나라 주변의 해역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있는 설정이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는 중국, 러시아와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한반도 주변해역에서도 머지않아 해저는 물론 그 상부수역에서의 제반 관할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 주변의 전체 해양관할권을 보다 광범위하게 규명해 줄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제도는 이러한 측면에서 그 설정에 대한 실익이 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각종 관련문헌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검토하여 먼저 경제수역 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을 하고 한국의 경제수역 설정에 대한 우리 차원에서의 필요성을 검토한 다음 경제수역 설정에 따른 주변국들의 입장과 우리나라의 입장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장차 주변국들과의 해양관할권 문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의 국익에 유리하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어 관련 대외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에 관한 법적 고찰

1. 경제수역제도의 성립및 정의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은 최근에 새로이 형성된 개념으로 그 역사적 배경은 1945년 9월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대륙붕선언을 하고 잇달아 남미체국과 아프리카체국이 차원에 기초를 둔 확장된 영해 및 어업수역을 주장하게 된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 직접적인 기원은 제3차 UN해양법회의 준비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¹⁾

1) R. R. Churchill and A. V. Lowe (1983), *The Law of the Sea* (Manchester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p. 125.

배타적 경제수역의 출현은 영해와 공해사이에 변이적 수역(transitional zone)²⁾을 제창하려는 노력이 국에 다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경제발전을 위한 개발도상국들의 열망을 나타낸 것으로 그들 연안에 있는 경제적 자원 특히 어업자원이 대부분 선진국들의 원양어선에 의해서 개발되던 것을 개발도상국 자신이 이에대하여 보다 큰 규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욕구³⁾와 그들의 강한 민족주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고⁴⁾ 볼 수 있다. 200해리까지 확장된 관할권선언을 한 연안국들은 자기들의 기준의 선언을 정당화 하려는 기대에서 UN 해양법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반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해양강대국들은 해군의 기동력(mobility)을 증가시키고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 좁은 범위의 연안국 관할권을 주장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두 그룹의 의견이 일치를 보지 못하다가 마침내 타협의 산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경제수역 제도이다.⁵⁾

배타적 경제수역의 성립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미국은 1945년 9월 28일 세칭 「트루만 선언」을 하여 해안에 인접한 일정 수역에 보존수역을 설정하고 관할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은 남미국가들은 지역적 법제도로서 또는 독자적으로 200해리 해양관할권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즉, 1952년 8월 칠레, 페루, 에콰도르는 「해양수역에 관한 Santiago 선언」을 채택하고 각각 그

연안으로부터 200해리내에서 “배타적 주권과 관할권”을 갖는다고 하였다.⁶⁾ 또한 무해통항을 보장한다고 하고 이 수역이 영해와 같은 성격을 가졌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하였다.⁷⁾ 이 선언의 특징은 해양관할에 관한 200해리 기준이 지역적 법제도로서는 처음 주장된데 있다.⁸⁾

처음에 남미제국은 일종의 어업자원을 관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국제회의흐름이 공해에서 연안국 관할권행사를 강력히 억제하자 점차 광범위한 영해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70년 5월 중남미 9개국의 「Montevideo 선언」에서는 200해리 영해를 요구하였고 그 해 8월 중남미 20여개국이 참여한 「중남미제국 해양법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의 이를바 「Lima 선언」이 채택되었다.

1972년에 와서 경제수역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게 되었다. 1972년 6월 카리브해제국은 「Santo Domingo 선언」을 채택하고 자연자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200해리 세습수역(Patrimonial Sea)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는 경제수역 개념의 새로운 이형을 나타내는 것이다.⁹⁾ 같은 해 6월 14일에 아프리카국가들은 Yaounde에 모여 영해를 넘어 경제수역 설치를 지지하는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1973년 5월에 Addis Ababa에서 개최된 O.A.U.의상회의에서 200해리를 넘지 않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것을 주장하였고 뒤이어 9월 알제리에서 열린 제4회 비동맹국

2) 영해내에서 연안국은 무해통항권을 방해하지 않는 주권을 가지고, 공해는 모든 국가에게 개방되며 전통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958년 공해에 관한 제네바 협약하에서의 공해는 영해의 외측한계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신 해양법하에서는 경제수역이 영해와 공해사이에 끼어들므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경우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3) R. R. Churchill and A. V. Lowe (1983), p. 125.

4) Lawrence Juda (1986), "The Exclusive Economic Zone : Compatibility of National Claims and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이하 ODIL로 줄임.), Vol. 16, No. 1, p. 2.

5) Thomas A. Clingan, Jr (1977), "Emerging Law of the Sea : The Economic Zone Dilemma," *San Diego Law Review*, Vol. 14, No. 3, p. 538

6) 임사선(1974), “경제수역 개념,” 「일본국제법외교잡지」, 제73권, 3호, p. 7

7) D. P. O. Connell (1982),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 I, ed. I.A. Shearer (Oxford : Clarendon Press), p. 553.

8) 이광호(1984),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고찰”, 「고시연구」, 제11권, p. 169.

9) 세습수역에 관한 상세한 것은 Jorge A. Vargas (1979), "The Legal Nature of the Patrimonial Sea : A First Step Towards the definition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22, pp. 153-165, pp. 171-172참조

수뇌회의에서도 200해리 이내의 「국가관할수역」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은 1971년 1월 콜롬보에서 열린 아시아 아프리카 법률 자문위원회에서 케냐가 처음 도입하였는데 이 새로운 개념은 이렇듯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지지속에 제3차 UN해양법회의가 시작되는 때와 발맞추어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케냐는 1972년 8월 해저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조약안」을 제시했고 그 수역의 최대한계를 200해리로 특정했다.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면서 모든 자원의 배타적 관할권을 주장하는 이같은 제의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인정하기에 이르렀으며, 1973년 제3차 UN해양법회의의 공식 의제로 채택되었다. 이리하여 1976년에 와서는 경제수역의 개념은 대부분 회의 참석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져 많은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이를 선언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제3차 UN해양법회의에서도 연안에서 200해리까지 모든 경제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의 설립을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타적 경제수역제도는 20세기 해양 법문제를 특징지우는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이해 관계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제도가 되었다.¹⁰⁾

경제수역은 배타적 어업수역, 200해리 영해, 세습수역 등 여러가지 명칭과 형태로 국제회의와 각국의 국내법령에 나타났으며, 마침내 1982년 UN 해양법협약(이하 협약이라 칭함)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은 국제적으로 consensus에 기초를 둔 명백한 법적 개념으로 받아 들여지게 되었다.

즉 협약 제56조 1항은 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관할권,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5조에서는 경제수역을 “영해이원에 인접한 수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57조는 그 폭에 관한 규정으

로 경제수역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할 수 없는 영해이원에 인접한 수역으로 경제적 이용을 목적으로 연안국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할 수 없는 영해이원에 인접한 수역”이란 영해 자체는 경제수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분명히 영해와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수역은 그 상공, 상부수역, 해저 및 경제수역내에 놓여있는 대륙붕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연안국의 관할권의 수역이고 공해에는 속하지 않는다.

“경제적 이용을 목적으로”한다는 것은 주로 생물자원, 특히 어업자원을 이용 보존하는 것을 말하며 에너지와 광물자원의 개발과 이용, 인공도서, 시설물과 구조물의 설치 및 사용 그리고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적 또는 군사적인 활동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해저전선 및 관선부설의 설치와 항행, 상공비행과 같은 경제적 중요성을 갖는 일정한 활동은 연안국의 권리로는 인정되나 연안국의 배타적 관할권에서는 제외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문구에서 경제라는 용어에 너무 큰 비중을 두는 것은 좀 위험하다.¹¹⁾

끝으로 연안국이 행사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soveteign rights)와 배타적 관할권(exclusive jurisdiction)은 주권(soveteignty)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협약에 따르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 기능적 권리로만 인정되고 있다. 그리하여 배타적 관할권은 협약에서 제시되

10) Duke E. Pollard (1975), "The Exclusive Economic Zone-The Elusive Consensus," *San Diego Law Review*, Vol. 12, No. 3, p. 604.

11) Yozo Yokota(1983), "How the Concept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Has Been Formed ?" *Exclusive Economic Zone,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Ocean Symposium, October 21-22,1982* (Tokyo : The Ocean Association of Japan), p. 15.

는 여러가지 조건에 의하여 제한된다.¹²⁾

2. 경제수역의 법적 체제

UN해양법회의 초기 단계에서 경제수역의 정확한 법적 성질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우선 엄격한 의미에서 해양에 관한 공해와 영해의 이중정책이 무너진 셈이며 경제수역은 공해와 영해사이에 위치한 특수한(sui generis) 성격을 가진 별개의 기능적 수역(separate functional zone)으로 이해할 수 있다.¹³⁾

이와 같은 특수한 성격을 갖는 경제수역의 법적 체제는 세가지 요소를 요한다. 첫째는 협약이 연안국에 부여하는 권리와 의무이고 둘째는 타국에 부여하는 권리와 의무이며 셋째는 앞에 두가지 경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정된 기타 권리이다.

우선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는 협약 제56조에 광범위한 용어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권리는 본질적으로 자연자원과 관련된다. 즉 연안국은 경제수역에서 해저, 하층토, 상부수역의 생물 또는 비생물 자원을 탐사, 이용,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한 주권적 권리와¹⁴⁾ 해수, 해류,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과 같은 경제적 탐사 및 이용을 위한 여러가지 활동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협약은 생물자원과 관련하여 배타적 어업수역에 관한 관습국제법 하에서 향유할 수 있는 것 보다 좀 더 포괄적인 권리를 연안국에 부여하고 있고 기타 경제자원에 관한 권리는 상당히 새로운 권리로서 이는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고 있다.¹⁵⁾ 또한 연안국은 인공도서, 시설물

및 구조물을 설치하고,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다. 그리고 연안국은 그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있어서 타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협약 규정에 양립하는 방법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두번째로 타국의 권리와 의무는 협약 제5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권리와 의무는 국제통신과 연안국의 요구에서 면하게 된 공해의 자유에 관한 것들이다. 즉, 모든 국가는 협약의 규정과 합치하는 한에서 항행, 비행 및 해저전선과 관선부설의 자유를 향유한다. 이상 세가지 권리의 공해상에서 보다는 덜 포괄적이며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의무를 지고 있다. 즉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정당히 고려하여야 하며 타국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제법 규정에 합치되는 연안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끝으로 연안국과 타국 그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는 권리¹⁶⁾로서 연안국과 타국간에 권리충돌이 발생할 경우, 동분쟁은 국제사회전체 및 각 당사국의 이해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모든 관련상황에 비추어 해결되어야 한다.¹⁷⁾ 필연적으로 외교적 수단에 의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고 만일 이것이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3. 경제수역의 외측한계

경제수역의 내측한계는 영해의 외측한계가 되며¹⁸⁾ 그 외측한계는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¹⁹⁾ 이는 200해리

12) 협약은 경제수역내에서 내륙국(land-locked States)과 지리적으로 불리한 국가(geographically disadvantaged States)의 이익을 고려하고(협약 제69조, 제70조) 생물자원 보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실행하며(협약 제61조, 제62조) 또한 타국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를 연안국에 지우고 있다.(협약 제58조)

13) R. R. Churchill and A.V. Lowe (1983), pp. 129-130.

14) “보존 및 관리”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연안국이 가지는 권리는 대륙붕에 관한 1958년 제네바협약과 관습국제법 하에서 해저자원에 대하여 연안국이 향유하는 권리와 동일하다. 이 권리는 연안국의 의무와 함께 협약 제61조에서 제73조까지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15) R. R. Churchill and A. V. Lowe (1983), p. 131

16) 가능한 예로서 잠수함의 해저청취기구의 설치, 접속수역을 넘어서 발견된 역사적 난파선의 처리, 순수과학조사에 사용되는 부표(buoys)에 대한 관할권 등을 들 수 있다.

17)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59조 참조.

18)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55조 참조.

19)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57조 참조.

가 경제수역의 최대폭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적은 폭도 선언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 오직 한 국가²⁰⁾만 제외하고는 경제수역을 선포한 국가들은 모두 허용되는 최대한계인 200해리까지 선언하고 있다.

200해리가 왜 경제수역의 최대폭으로 선택되었는지는 순전히 역사적, 정치적인 것이고 지리적, 생태학적 중요성은 없다. 제3차 UN해양법회의 초기 단계에서 연안국들이 주장한 가장 광범위한 수역은 200해리 선언이었고 그러한 국가들에 대하여 200해리보다 더 적은 한계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일이 어려웠기 때문에 가장 넓은 범위의 기준 선언형태를 택함으로써 가장 쉽게 그 외측한계에 대하여 합의를 볼 수 있었다.²¹⁾

협약에 의하여 특수한 성격을 부여받은 경제수역이 명백히 영해와는 분리됨에 따라 그 폭원은 영해의 폭원을 제한 것이 된다. 따라서 12해리 영해를 선언한 국가는 최대한 188해리를, 3해리영해를 선언한 국가는 197해리의 경제수역을 갖는 셈이다. 그러나 협약 제3조에 의하면 영해는 적절한 기선에서부터 12해리를 초과할 수 없는 바 이 규정은 의무적인 것으로 점차 12해리영해로 나아감에 따라 경제수역의 폭은 188해리로 확장화되었다.

경제수역의 외측한계선은 그 위치를 확인하기에 적절한 단수 또는 복수축척의 해도에 표시되어야 한다. 적절한 경우 이러한 외측한계선은 측지자료

를 명기한 지리적 좌표로 대체될 수 있다. 연안국은 이러한 해도 또는 지리적 좌표를 적절 공시하여야 하며, 동 해도 또는 좌표 일부를 UN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야 한다.²²⁾

4.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세계 각 지역에서 연안국들은 그 주변국의 실재로 인하여 완전한 200해리수역을 선언할 수 없고 대향국 또는 인접국간의 거리가 400해리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경계획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제수역 경계획정 문제는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와 함께 분쟁당사국간의 경계획정기준, 잠정조치 및 분쟁 해결절차를 둘러싼 입장대립으로 제3차 UN해양법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문제였다. 왜냐하면 경계획정문제는 한가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규준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고²³⁾ 또한 해양경계획정을 둘러싼 분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현실적 이익이 관련되기 때문이다.

III. 한국의 경제수역 설정에 대한 필요성

오늘날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제도는 제3차 UN해양법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확립되었고, 세계적으로 국가간의 관행으로서 성립하기에 이르렀

20) Madagascar는 1973년 100해리 경제수역을 선언하였다. (*Madagascar, Ordinance No. 73-060 of September 28, 1973, art.2*).

21) 그러나 이러한 넓이의 수역을 처음 선언한 국가인 칠레가 왜 200해리 형태를 취했는지는 문제가 되는데 Hollick교수에 의하면 이는 일종의 우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칠레의 선언은 당시 근해의 고래잡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행한 것인데 근해에서 외국 포경선을 추방할 수단을 자국법에서 찾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전의 그러한 국제선례가 필요하였고, 그 중 가장 회망적 선례로는 1939년 10월 파나마선언에서 채택한 보호수역(security zone)을 들었다. 그 보호수역의 범위는 300해리보다 더 적지는 않았는데 이를 200해리로 잘못 해석하였다.

(Ann L. Hollick(1977), "The Origin of 200-Mile Offshore Zone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이하 AJIL로 줄임), Vol.71, No. 3, pp 494-500)

22)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75조 참조.

23) 정확한 경계획정규칙을 확립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각 경계지역의 상황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순수지리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지역은 독특하고 그곳의 해안선의 형태, 해저의 지형 및 지질, 상부수역의 성격 간에 차이점이 있다. 두 번째는 확장된 해저지역은 국가관할권하에 놓이게 됨으로 어느정도 연안의 경계획정은 육지경계에 관한 국가실행에서 얻어진 경험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Robert W. Smith (1982). "A Geographical Primer to Maritime Boundary-making," *ODIL*, Vol. 12, No. 1/2, pp. 1-2).

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어업자본을 확보하고 보호함은 물론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경제수역을 설정·선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필요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3 가지로 대별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항해 자유권적 측면

비타적 경제수역은 연안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에 관해서는 공해에서와 마찬가지로 제3국의 자유가 인정된다. 1982년 UN해양법협약²⁴⁾에서도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수역에서 제3국의 항해·비행·해저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설치에 관하여 공해자유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제3국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제법 규칙에 합치하는 연안국의 법규만을 준수할 의무가 있을뿐이다. 그러나 연안국은 그 수역의 자원이용 및 해양오염 방지를 통한 해양환경의 보호와 같은 일정한 분야에서 규칙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수역내에서라도 항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²⁵⁾ 이와같이 해양에서의 자원을 이용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같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연안국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제수역 제도라는 법적 제도의 실시는 공해에서의 항해의 자유와 같은 제3국의 자유를 무작위로 방임함으로써 발생할지도 모르는 해양의 무질서를 막기 위한 경제책으로의 역할을 위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의 경제수역설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자원 관할권적 측면

경제수역이란 자원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설정한 수역이기 때문에 자원관할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때의 자원관할권이란 생물자원·비생물자원에 대한 개발, 탐사, 이용과 이를위한 인공섬, 설치물, 구조물을 설치하는 권한으로 상당히 광범

위하다. 그리고 1982년 해양법협약에는 분쟁해결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²⁶⁾ 즉, 연안국의 권리와 제3국의 권리에 관하여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각 당사자들의 이익을 비교하고 형평과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여기서 자원관할권이라고는 하였지만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5편에서는 주로 어업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광물자원에 관해서는 제4편 대륙붕에 관해 규칙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어업관할권이란 경제수역에서 잡을 수 있는 어획고를 확정하고 이에따라 어업활동을 규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주로 두가지가 문제되는데, 제3국의 어업활동을 규제하는 것과 이동성 어업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규율하는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업동향을 살펴보면, 연근해의 어업자원은 점점 고갈되 가고 있고 주변국가인 일본 등의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로 인해 그들의 수역에서 우리의 어업활동을 불허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원래 경제수역제도 자체의 목적은 자원보존에 있으므로 어획고의 증강만으로 경제수역 문제를 평가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견해로서 어선의 증가와 어로기술의 발달에 따라 어획고는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당장의 어획고 감소가 있더라도 오히려 질적으로 실리적일수 있고 기술이나 장비면에서 우리가 일본선단에 뒤떨어지는 현실과 명태, 조기등 연안의 자원이 양적·질적으로 고갈돼가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 근해어장의 영구적 보존과 어업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주변해역에서의 경제수역선포가 필요하다고 본다.

3. 환경 보호권적 측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국제해상 교통이 빈번해짐에 따라 대형 유조선이나 해물질, 화학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의 공해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24)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58조 참조.

25) 박춘호·유병화(1986), 해양법, 서울: 민음사, p. 74.

26)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59조 참조.

되자 해양환경보호문제는 급격히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40여년 전부터 전개되기 시작한 공해 방지 통제권 행사는 인접해양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이 각종 명목으로 강화됨에 따라 더욱 엄격히 시행되게 되었다. 이에따라 항해자유의 원칙은 상대적으로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1967년의 Torrey Canyon호 사고와 1978년의 Amoco-cadiz호 사고등 계속적인 대형 오염사고들이 국제공동체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게되자 공해방지 통제권은 급격히 강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하여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는 연안국들의 공해방지 개입권을 강화시키는 등 해양환경오염의 예방·감소·통제를 위한 UN해양법 협약을 제도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 알래스카연안에 좌초한 Exxon Valdez호 사고, 1993년 1월 Scotland북부 셔틀랜드제도 해역에서 좌초한 Braier호 사고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 Andaman 해역에서 Sanko honour호와 충돌한 초대형 유조선 Maersk Navigator호 사고 등 최근에 잇따른 대형 해양오염사고로 인해 연안해역을 포함한 극심한 해양환경의 대대적인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에서의 유류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국제적, 지역적 그리고 국가적 제도의 확립과 이에대한 현실성 있는 실행능력의 배양이 절실한 실정이다. 더우기 해양오염은 연안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사정에 따라서는 조류, 풍향,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제3국의 영해 및 공해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일환으로 어족자원과 관련한 국제법의 제정 공포가 필요하다고 본다.²⁷⁾

황해 및 동지나해와 같은 반폐쇄해에서는 특히 조류의 흐름이 강한 곳이므로 이 해역에서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연안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곳이다. 그리고 이 해역은 수심이 낮기때문에 일단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해수로 인한 자정능력이 상당히 취약한 곳이기도 하다. 또한 황해와 동지나해에서의 해양오염은 주로 연안국으로부터 이곳으로 흘러오는 하천

수를 통해, 연안국들의 임해공업단지로 인해, 그리고 대륙붕개발과 유조선의 빈번한 왕래로 인해 발 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연안국에 의한 해양 석유개발로 인해, 특히 최근에 중국측에 의한 발해만 및 황해와 동지나해에서의 해저석유 개발에 의한 해양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이 해역에서의 해저석유의 개발이 더욱더 본격화 될 경우 해양오염의 위협은 고조되지 않을 수 없다.²⁸⁾

이에 더하여 중동에서 석유를 적재하고 우리나라나 일본으로 항해하는 유조선이 동지나해에서 해난사고를 당하는 경우와 발해만에서 석유를 적재하고 일본으로 항해하는 유조선이 황해에서 해난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생각할 때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심화된다. 또한 러시아와 일본은 지금까지 주변국들의 이목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동해에다 핵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를 자행하는 등 명백한 국제법의 위반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동해로부터의 직접 간접적인 해오염피해를 입은 것임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인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현실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주변해역에 대해서도 반드시 경제수역을 설정·선포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보다 확고한 주권적 권리를 확보하여 장차 보다 나은 주변 해양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만 하겠다.

IV. 경제수역 설정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한국의 주변국가들로는 일본, 중국, 대만, 북한, 러시아가 있으며 이들 국가하 중 일본과 대만 및 북한, 러시아만이 200해리 수역을 선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해와 동지나해와 같이 연안국들이 서로 400해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수역내의 자원개발은 다변적 또는 쌍무적 해양경계획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일간의 공동개발수

27) 박종성(1978), 「해양법연구」(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p. 268.

28) 이영준(1982), “국제법상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 153-160 참조.

역은 예외로, 경계획정이란 분쟁수역에서의 자원개발에 대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²⁹⁾

지금까지 각국의 자체 대륙붕으로 간주하는 지역에 각각 관할권을 확장시킴으로써 가능한 한 많은 해저지역을 가지려는 시도를 하였다. 즉 일본은 중간선원칙을, 중국은 자연연장선원칙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은 양쪽 혼합형을 택하고 있다. 즉 황해에서는 중국에 대하여 중간선원칙을 동지나해에서는 일본을 향하여 자연연장설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제 경계수역 경계획정시 우리와 직접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주변국의 입장 및 경계수역 제도의 수용에 관한 국제적 상황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일본의 입장

우선 경계수역제도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유는 등제도가 확실히 그들의 원양어업에 심한 타격을 줄것이 예상되기 때문일 것이다. 카라카스회기까지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 제도를 지지하기에 주저하는 입장이었다. 일본대표의 중요한 관심사는 다음과 같았다. 즉 “일본과 같은 전통어업국가의 이익은 경계수역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협약 규정에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본이 200해리까지 연안해저 지역내의 연안국의 제한된 권리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반대한 것은 제한된 수역내에서의 외국어민에 의한 어업권에 관한 것이었다.³⁰⁾

비록 일본이 생물자원의 견지에서 경계수역개념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광물자원의 견지에서는 200해리까지 배타적 관할권의 확대를 인정할 태세가

되어 있었다. 카라카스회기에서 일본은 해양의 광물자원과 생물자원의 본질에 있어 근본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계수역내에서 그 개발과 이용에 대하여 각기 다른 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³¹⁾

한편 경계획정에 관한 입장으로는 1973년 8월 14일 해저위원회 제2부속위원회에서 일본대표는 연안국 해저에서의 경계획정은 중간선 원칙에 따라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그 어느 것도 각자 연안해저지역의 경계획정에 관련된 연안국간의 기준의 합의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동 회기에서 Ogiso대사는 거리기준은 수심, 지형, 지세에 기초한 기준보다 더 형평한 해결을 보장한다고 강조하였다.³²⁾

현 해양법협약하에서 일본은 지질적으로 불리한 요인이 있으므로 해저지형과 무관한 거리기준에 의하여 경계획정을 하는 것이 불리한 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륙붕의 광물자원에 대한 일본의 이들은 아이러니칼하게도 경계수역의 어업자원에 대한 손해에서 생기게 된다. 일본의 생존과 번영은 세계해양의 70%에 해당하는 수역의 완전한 사용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양제도의 급변한 재구조로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기득권에 대한 최대한 방어와 최소한의 현해양법의 변화에 목표를 두고 있는 입장이다. 비록 경계수역제도가 생물자원의 견지에서는 일본에게 손해가 있지만 그 거리기준이 광물자원에 적용되는 경우 동지나해의 대륙붕에서의 석유생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³³⁾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은 경계수역 설정시에 중간선을 최대한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29) Choon-ho park(1983), "Problems of Exclusive Economic Zone Jurisdiction in the East China and Yellow Sea," *Exclusive Economic Zone*, Proceedings of the 7th International Ocean Symposium, October 21-22, 1982 (Tokyo : The Ocean Association of Japan), pp. 66-67.

30) Choon-ho park (1975), "The Sino-Japanese-Korean Sea Resources Controversy and the Hypothesis of a 200-Mile Economic Zone,"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16, No. 1, pp. 35-37.

31) Kazuomi Ouchi (1978), "A Perspective on Japan's Struggle for Its Traditional Rights on the Oceans," *ODIL*, Vol. 5, No. 1, p. 125.

32) UNCLOS III, *Official Records*, Vol.2, Summary Records of Meetings, p. 147.

33) Kazuomi Ouchi(1978), p. 131.

지금까지의 한국과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첫째, 오끼나와해구를 한 일간의 대륙붕경계로 볼 수 없다는 주장과 둘째, 설사 그것을 양국간의 경계로 보더라도 동 해구 너머의 한국측 대륙붕상에 일본영토인 조도와 남녀군도가 있으므로 이것을 기점으로 한 양국간의 공유대륙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독도에 관한 한국과의 영토분쟁을 피하고 중국과의 첨각열도(Senkaku Islands)에 관한 영토분쟁³⁴⁾을 우려하여 1977년 5월 20일 「어업수역에 관한 잠정조치법」을 제정하면서³⁵⁾ 황해와 동지나해에 접하는 일본연안에 대해서는 200해리를 설정하지 않고 일본 영해의 한계인 12해리³⁶⁾로 하고 있다.

일본은 경계수역 설정시 동지나해에서는 조도와 남녀군도를 기점으로한 양국간에 중간선에 의한 경계획정을 주장할 것이고 동해에서는 독도의 영유권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 확실하다.

2. 중국의 입장

중국은 일본과는 달리 1970년 11월 이래 200해리수역 관할권에 대한 남미제국 선언을 열렬히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경계수역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경제수역의 외측한계는 최대한 영해기선에서 200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연안국의 경계수역내의 모든 자연자원은 전체 상부수역, 해저, 하층토의 생물과 비생물자원을 포함하며 연안

국은 자원을 보호·개발·이용하기 위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갖는다”는 것이다.³⁷⁾ 카라카스회기에서도 중국은 일찌기 이러한 입장을 반복 주장하고 있다.³⁸⁾

이렇듯 중국은 일관성있게 200해리수역제도를 지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0해리 경계수역을 선포하고 있지 않으며 경계획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 태도가 확실하지 않다. 더우기 자기들의 입장을 외부에 알리지도 않고 주변 대륙붕 지역도 정리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아직 200해리수역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생각컨데 첫째로, 황해 및 동지나해와 같이 지리적으로 복잡한 상황하에서 주변국과의 경계획정을 할 수 있을 만큼 해양법자체가 명료하지 못하고 둘째로, 그들은 육지자원이 풍부하여 해양자원의 개발에 신경을 쓸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지 않을 뿐더러³⁹⁾ 세째로, 일부 주변국과의 정치적 관계가 경계획정의 교섭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그러므로 중국자체 입장에서 볼 때 200해리수역을 선포할 실용적 필요성이 당장 없다는 점이다.⁴⁰⁾

경계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으로 알려진 것은, 중국외교부 1974년 2월 4일 성명으로 동지나해의 대륙붕은 관계국가와의 상호협의를 통하여 육지영역의 자연연장원칙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해양선언에 있어서 한가지 지적할 것은 중간선원칙에 대해서는 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34) 첨각열도의 영토분쟁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는, Ying-jeou Ma(1982), “The East Asian Seabed Controversy Revisited : Relevance(or Irrelevance) of the Tiao-Yi-T'ai(Senkaku) Islands Territorial Dispute,” *Chinese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and Affairs*, Vol. 2, pp.1-44; K. T. Chao(1982), “East China Sea : Boundary Problems Relating to the Tiao-Yi-T'ai Islands,” *Chinese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and Affairs*, Vol. 2, pp. 45-97.

35) 일본은 소련과 어업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200해리 어업수역을 선포하였는데 이는 200해리 경계수역을 선포하고 있는 러시아와 협상을 하는데 유리하거나 적어도 동등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도 되어진 것이다.

36) 1977년 5월 20일 법률 제30호로 공포된 일본의 영해법은 제1조에서 영해의 폭을 12해리로 규정하고 있다.

37) 28(3) U.N.GAOR Supp 21, pp. 72-73, U.N. Doc. A/9021 (1973)

38) Choon-ho Park (1975), pp. 34-35.

39) 중국은 내륙과 빌해만에서의 석유생산으로 충분히 석유수요를 충당할 수 있으므로 해서 동지나해에서의 해양자원개발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40) Choon-ho Park(1979), “China and Maritime Jurisdiction : Some Boundary Issues,”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22, p. 119.

는 점이다.⁴¹⁾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중국의 입장은 자연연장론이라고 할 수 있다. 황해와 동지나해의 해저지형 및 지질구조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즉 황하와 양자강에서는 유사이래 토사(silt)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특히 황하에서는 매년 150억 입방야드의 토사가 유출되어, 그 결과 섬에 불과했던 오늘날의 산동반도가 대륙과 연결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이 지역의 대륙붕은 중국에 속한다는 것이다.⁴²⁾ 현 해양법협약에 따르면 대륙붕은 단지 그러한 토사의 연장과는 관계없는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와 해양법협약 제76조도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을 언급할 때 그것은 단지 대륙붕의 측지학적 성격을 말한 것인지 흙과 모래의 자연적 유출을 뜻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⁴³⁾ 또한 해양법협약상 대륙붕의 정의에도 거리개념이 도입되었는데 대륙붕주변부가 영해측정기선에서 200해리까지 연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0해리까지 연안국의 대륙붕으로 한다는 규정은 대륙붕개념이 자연과학적인 것에서 법적인 개념으로 옮아 갔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⁴⁴⁾ 그러므로 이와 같은 중국의 주장은 현 해양국제법상 근거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중국이 경계획정에서 주장하고 나올 수 있는 또 한가지 문제로는 황해에서의 최심선이 황해를 3등분할 때 그 3분의 2가 중국측에 속하고 나머지 3분의 1이 한국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곳에 한반도

를 따라 존재하고 있는데, 이 최심선을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보다 더 많은 해저지역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만일 중국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한다면 통킹만의 해저지형을 둘러싼 베트남과의 관계에서는 결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중국으로서는 난처한 입장에 놓일 것이다.⁴⁵⁾ 이러한 이유 등으로 중국이 해양경계획정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3. 북한의 입장

1977년 8월 제3차 해양법회의 제2위원회에서 북한대표는 200해리 경제수역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이때 경계획정은 중간선원칙 또는 등거리선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⁶⁾

북한은 이미 1977년 6월 21일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였으며⁴⁷⁾ 그 주요내용을 보면 경제수역의 범위는 영해 측정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이며 만일 200해리가 그어질 수 없는 수역에서는 중간선까지를 그 범위로 한다는 것이다.⁴⁸⁾

경제수역선언을 보충하기 위하여 북한은 1978년 8월 12일 이른바 「경제수역내에 있어서의 외국의 경제적 활동과 외국선박, 외국항공기에 대한 법규(Regulation Regarding Economic Activities of Foreigner, Foreign Vessel and Foreign Aircraft Within the EEZ)」를 채택하였다. 경제수역에 대한

- 41) Choung-il Chee(1979), *Problems Arising from the Adoption of 200mile EEZ and the Restructuring of Current Korea-Japan Fishery Relations*, Seoul : The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pp. 38-39.
- 42) 김찬규(1973), “대륙붕개발을 둘러싼 한 중 일의 주장,” 「국제문제」, 통권 제34호, p. 52.
- 43) Chung-il Chee(1979), 11.21-27.
- 44) 김찬규(1984), “UN해양법협약과 한 중공간 대륙붕 경계획정,” 「해양정책동향」, 제5호, 서울 : 해양연구소, pp. 10-11.
- 45) 중국과 베트남간의 경계획정에 관하여는 Choon-ho Park (1979), pp. 137-138 참조.
- 46) UNCLOS III, *Official Records* (1975), Vol. 2, p. 215.
- 47) 북한은 경제수역 설정에 관한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1977년 6월 21일 채택하고, 동년 7월 1일 이를 발표하고 동 정령은 1977년 8월 1일부터 실효된다고 보도하였다.
- 48) Jung-gun Kim (1985), “Reflections on the Attitude of North Korea Toward the Law of the Sea (UNCLOSIII Treaty),” *Asian Perspective*, Vol. 9, No.1, pp. 78-79 ; Charn-kiu Kim(1982), *The Attitude of North Korea Toward the Law of the Sea*, Peace Studies. Monograph Series No. 2 (Seoul :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Peace Studies.Kyung Hee University), p. 26.

북한의 선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① 북한은 자기네 경제수역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 를 가지며, ② 그들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인명과 자원”에 대하여 침해가 되는 어떠한 행위 도 인정하지 않으며, ③ 사전승인없이 어떠한 외국 인, 외국선박, 외국항공기도 북한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⁴⁹⁾ 이렇듯 북한은 200해리수역내에서 주권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치권”(autonomous rights)을 선언하고 있는 동시에 “그들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행위들” 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극히 포괄적인 제한을 가함 으로써 영해와 유사한 성격의 수역을 만들고 있다. 이런 모호한 선언은 주관적 독단적 판단의 여지가 있으며 심지어 이 수역내에서 항행의 자유가 인정 될련지도 의심스럽다.⁵⁰⁾ 북한의 경제수역 내용은 협약에서 인정되는 것보다 훨씬 초파하고 좀 더 강력하다. 그러므로 북한의 경제수역제도는 법적 으로 인정되지도 않고 선례에 의해서도 뒷받침되 지 못한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다.

북한은 또한 1977년 8월 1일 경제수역을 보호하 고 민족적 이익과 자주권을 군사적으로 지킨다는 명목하에 50해리 해상군사경계선을 설치하였다.⁵¹⁾ 우선 자국의 영해내에서도 군사적 활동을 이유로 무해통항권을 부정하는 군사경계선의 선언 또한 해양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하겠다.⁵²⁾ 북 한은 동해에 있어서는 경제수역과 군사수역을 선 언하고 그 확정에 있어서는 비교적 정확한 반면, 황해쪽에서는 경계선을 긋는 일반원칙을 언급하기 보다는 경제수역 선언을 공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 지 않다. 이는 아마도 중국의 반응을 우려하였기 때문인 것 같다. 중간선원칙을 주장하는 북한은 자연연장선원칙에 따른 일관성있는 선언을 하고 있는 중국과 충돌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북한의 경제수역선언은 한국

과 러시아가 등거리원칙을 기초로 긋는 것과도 충돌이 된다. 황해에서의 서해5도 주변문제를 포함하여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은 점은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러시아(구소련)의 입장

러시아(구소련)은 수년간 경제수역제도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1974년 베네주엘라의 카라카스회의에서 미·영·불과 더불어 200해 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수락하면서 이 해역에서의 자유통항은 다른 해양국의 제안내용과 크게 차이 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즉 미·영·불은 200해리 경제수역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다. 경제수역은 서구의 어업을 보호하고 해군과 상선에 대해서도 비중을 두고 고려된 해양법상의 제도가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구소련)의 어업은 대부분 외국근해에서 조업하는 것으로서 경제수역제도의 출현과 함께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와같은 일련의 시련을 경험한 러시아(구소련)는 제3차 UN해양법 회의가 임박해지자 급기야는 태도를 변경하여 이 제도를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카라카스회기의 모두에서 러시아(구소련)대표는 「200해리 경제수역에 대한 안」을 동구체국과 공동으로 제안했는데, “연안국은 경제수역내에서 생물, 광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다만 연안국은 그 수역내에서 타국선박의 항행, 상공비행, 해저케이블과 파이프라인부설, 기초적 과학조사에 대한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어업에 대해서도, 자원의 최대이용과 보존에 있어서 국제기구와의 협력의무를 규정하여 연안국의 어종별 연간 포획허용량과 그 허용량 중 차국포획량과 외국어민에 할당되는 양을 결정하여 타 국민의 어획을 허용해야 한다는

49) Jung-gun Kim(1985), pp. 79-81.

50) 북한의 경제수역내에서 실제로 외국선박이 나포된 예가 많다. 이에 관한 상세한 것은 Charn-kiu Kim(1982), pp. 29-30 참조

51) 동 수역에 관한 상세한 것은 Choon-ho Park (1978), “The 50-mile Military Boundary Zone of North Korea,” AJIL, Vol. 72, No. 4, pp. 866-875.

52) 김정건(1980), “한국과 북한의 해양제도에 관한 소고,” 「연세행정논총」, 제7집, 서울 : 연세대학교, p. 249.

53) 일명 일본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뜻으로 「평화선(peace line)」이라고도 함.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러시아는 현재 동해를 포함하여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여 각종 자원문제는 물론 해양환경의 분야에까지 광범위한 관할권행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V. 경제수역 설정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그 대책

1. 한국의 경제수역 설정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수역은 선포하고 있지 않으나 경제수역의 관할권내용인 어업, 해저광물개발 등에 관하여는 많은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 있다. 즉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⁵³⁾, 해저광물자원개발법, 한·일어업협정, 한·일대륙붕협정 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경제수역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⁵⁴⁾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독도의 영유권문제와 한일 어업협정이 문제되는데 지금까지는 독도에 대하여 우리나라 영해법⁵⁵⁾은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일본은 독도주변의 12해리 영해가 사실상 존재하고 있다. 독도를 중심으로 경제수역을 획정하게 된다면 일본과의 영토에 관한 분쟁이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한일어업협정은 자체 경제수역의 설정에 대한 저해요인이 되지는 않으나 다만 이를 지속시키느냐 또는 폐쇄시키느냐가 문제된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최근 공식적 외교관계를 수립할 때까지는 7·4공동성명 이후 공산권과의 교류를 지향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책을 바라는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중국과의 충돌요인을 만들고 싶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의 정책적 견지였다. 그러나 최근에 중국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주변 정세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게 되었고, 따라서 머지않아 중국정부는 해양관할권문제에 관하여 우리정부에 표면적으로 문제시하고 나올 것이 명백하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새로이 경계선을 설정함으로써 야기될지도 모르는 긴장을 피하려 하고 서해5도를 중심으로한 경제수역을 설정하려고 할 때 북한과의 해상경계선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제 200해리 경제수역의 설정은 하나의 국제법상의 제도로 변화되었고 우리도 이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정당한 이익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수역을 선포하기 전에 우선 국내법적 조치로 첫째, 평화선(peace line)과 독도주변과 관련해서 관할권정비를 위한 영해법의 재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며 둘째, 해양오염방지법의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세째, 경제수역에 대한 국내법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수역에 관한 법은 국가실행에 있어서 우세한 기준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아마도 미국의 경제수역법이 유용한 지침형태로 제시될 수 있겠다.

즉 경제수역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목표를 구체화하여야 한다.⁵⁶⁾

① 경제수역내에서 보다 확실하고 일관적이며 통합적 운영체계를 위한 한국의 종합적·국가적 해양정책이 확립되어야 한다.

② 동 수역내 해양정책에 대한 장기적 접근이 제시되어야 한다.

③ 단일 지리적 수역내 1982년 해양법협약에 따르는 모든 생물 비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이 확인되어야 한다.

④ 경제수역을 통한 자원의 다목적 운영이 제시되어야 한다.

⑤ 외국의 경제수역내에서의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이익 및 권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54) 김찬규(1980), “아국의 200해리 수역설정과 관련된 문제점및 대책,”『연구논총』(서울:국제문제조사연구소), 11월호, pp. 215-217 참조.

55) 한국의 영해법은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37호로 공포되었으며 1978년 4월 30일 발효되었다. 동법 제1조에서는 12해리 영해를 규정하고 있다.

56) Diane ManiFold (1984),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Act,” *Exclusive Economic Zone Papers*, OCEAN'84 Conference Proceedings (Maryland;NOAA Ocean Assessments Divison), pp. 132-137.

⑥ 그 외 경제수역에 관한 특별한 문제들이 명세화되고 언급되어야 한다. 즉 확장된 대륙변계의 정의, 경제선 조정체제, 해양과학조사, 폐기물 투하(dumping)에 의한 해양공해, 외국의 어업행위와 관련된 문제로서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에 대한 어업허가 내지 그 취소조건, 어업허가료(fishing licensing fees) 등에 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경제수역법 위반시의 제재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음은 대외적 조치로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2. 일본과의 관계

일본과의 경계획정 문제는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한일어업협정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와 독도주변의 해역에 대한 조치문제이다.

우선 한일어업협정 자체는 경제수역의 선포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는다. 동 협정은 5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후에는 어느 일방이 타국에 대하여 협정을 종식시킬 의사를 통고할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⁵⁷⁾ 그러므로 우리가 경제수역을 선포할 의사만 결정한다면 그로부터 1년 후 동 협정은 폐기될 것이다.

한일어업협정에 대하여는 종래 두가지 서로 다른 정책선택이 제시되고 있다. 하나는 한일어업관계를 현 협정을 중심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는 현상유지책이고 다른 하나는 신해양법 내용에 따라 경제수역을 설정하여 일본어선에 대하여 동 구역 내에서의 어획량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현 협정을 전면 수정하자는 것이다.⁵⁸⁾ 두가지 정책간의 견해는 한일간의 어업손실의 비교에서

나온 것이다.

전자의 견해는 한일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어업문제만이 독자적인 해결이 어렵고 어업실적면에서 경제수역 선포시 한국의 손실분이 일본의 그것 보다 크다는 것이다. 한편 후자의 주장은 한일간의 어업관계는 해양법의 발전에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 협정의 재 조정이 불가피하며 또한 200해리수역 선포라는 세계적 추세로 인하여 우리의 원양어업은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 이러한 손실을 연근해 어업에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⁵⁹⁾ 어업실적의 비교에 있어서도 현 협정의 존속은 우리 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⁶⁰⁾ 다시 말하면 신해양법에 따른 200해리 제도의 도입은 결국 한국의 어업이익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경제수역 설정이 근해어장의 어업자원의 보호를 위한 것임을 이미 지적하였듯이, 경제수역의 선포는 동시에 동협정의 폐기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주목해야 할 것은 최근의 동향으로 지금 일본내에서 한일어업협정의 전면적인 수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한일어업교섭타개를 위하여 한국에 대해서도 200해리법을 적용키로 의향을 굳혔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 보도에 의하면 일본측은 동협정의 폐기를 의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응해서 우리도 200해리 선포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⁶¹⁾ 경계획정기준을 보면 우선 우리와 일본은 대향관계에 있으므로 200해리수역의 해상경계는 결국은 중간선에 의할 것이나 일본이 이에 앞서 독도의 영유권문제를 재론할 것이다. 협약 제121조 3항에 따라 사람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단순한 암석은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으므로 독도는 위와 같은 성질을 가진 섬으로 경제수역을 소유할 수 없고⁶²⁾ 동조 2항

57) 한일어업협정 제10조 2항.

58) 지정일(1978), “한·일·미의 어업관계의 쟁점 및 분쟁해결책,” 「국제법학회논총」, 통권 제43,44호, p. 336.

59) 이서항(1985), “한·일 어업협정 20년의 재평가—신해양법 확립과 관련하여—,” 「국제법학회논총」, 통권 제58호, pp. 40~42.

60) 한·일간의 상대국 가상 200해리 수역내에서의 어업현황은 한국이 15~17만t, 일본이 20만t 이상으로 일본어선의 어획량이 훨씬 많으며 어획금액도 높아 어느 쪽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양국간의 200해리 선포시 일본이 한국보다 더 손실이 크다고 한다.

61) “일, 한일어협 전면개정 검토,” 「동아일보」, 1986년 11월 11일자, p. 1.

62) 독도는 사면이 해수로 둘러싸여 있고 해발 157m에 자리잡은 동도·서도와 32개의 암도로 구성되어 있다. 독도는 아직까지 미개발상태에 있어 통상적인 인간의 거주와 경제생활을 하기에는 불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에 따라 자체의 영해만을 가질수 있다. 동해상에게 양국간의 200해리수역을 선포할 경우 독도와 그 영해는 한국의 200해리 수역내에 들어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때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영토라고 항의하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영유권문제와 관계없이 독도가 경계획정의 기점으로 사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실행된다. Karl이론에 따르면 독도와 같은 경우는 경계획정에서 왜곡효과(distorting effect)가 발생하므로 기점으로 사용될 수 없고 단지 12해리 영해만 갖게 된다는 결론이다.⁶³⁾ 결과적으로 영유권에 관계없이 독도는 경계수역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된다고 하겠다.

반면에 울릉도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의 경계수역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경계수역 경계선은 한국본토의 연안으로부터의 경계수역선의 외측한계와 울릉도의 경계수역선의 외측한계와의 연결이라고 하겠다. 한편 일본측에서는 은기도 또한 울릉도와 같은 법적 권한이 있으므로 즉 동해상에서의 경계수역 경계선은 울릉도와 은기도를 기점으로 한 중간선이 된다 하겠다. 이는 새로운 해양법협약에 양립하는 획정방식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그어진 경계선은 독도의 주변수역을 통과하는데 독도는 한국의 200해리수역에 위치하게 된다. 한 일본학자는 독도를 무시하고 그러한 영토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든간에 양국간의 경계선을 긋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⁶⁴⁾ 즉 독도의 영

유권과는 별도로 경계획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본다.

동지나해에서는 경계수역 경계획정시 일본측의 조도와 남녀군도가 그 기점으로 사용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이 섬들 역시 경계수역을 가질 조건을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고⁶⁵⁾ 경계획정시 왜곡효과를 가지므로 해서 기점으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영해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동지나해에서는 우리측에서 마라도·우도·상백도·홍도·거제도·영도를 기점으로 사용하고 일본측에서는 오도열도, 대마도(Tsushima), 견도(Mishima) 등을 기점으로 사용하여 그 중간선을 그을 수 있다. 이 지역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같은 방식으로 중간선이 그어지는 경우 일본의 200해리수역이 제7광구의 상부수역 중 상당부분을 포함하게 되어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 관해서 협약 제78조 1항은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는 상부수역 또는 동 수역상공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한 국가의 대륙붕이 공해하 또는 타국의 경계수역 하에 놓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이 주장하는 대륙붕위의 일본의 200해리 상부수역제도는 한국의 대륙붕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수 없다. 또한 1974년 공동개발협정이 관할권문제를 유보해 놓고 있으므로 양국이 이 협정을 무효화하지 않는 한 대륙붕에 관련된 법적 문

그러나 현지를 담사한 박종성교수에 따르면 독도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건설하면 이 지역에서 인간의 거주와 경제생활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독도를 완전한 자연도로 승격시켜 200해리 경계수역 설정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로 우선 매립작업이 선행되고 다음 일련의 가공과 건설을 한다면(가공행위는 해양법상 합리적이라고 한다.) 여기에 경계수역을 선포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보고 있다.(박종성(1978), “경제수역기선으로서의 독도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통권 제43·44호, p. 126).

63) Donald E. Karl이 지적하기를, 중간선내에 있으나 영해한계를 넘어 위치한 암석으로된 섬은 만일 그 섬이 중간선에서부터 12해리 밖에 떨어져 있으면 대향국간의 경계획정에 있어서 중간선에 대한 왜곡효과를 나타냄으로 단지 영해만 가질수 있고 기점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섬이 중간선에 가까이 있으면 섬의 영해쪽은 중간선에 연결되어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Donald E. Karl(1977), “Islands and the Delimitation of Continental Shelf : A Framework for Analysis,” AJIL, Vol. 71, pp. 657-662 참조.

64) Kiyofumi Nakauchi (1979), “Problems of Delimitation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Sea of Japan,” ODIL, Vol. 6, pp. 313-316.

65) 남녀군도와 조도의 크기는 대단하지 않고 가장 큰 것은 경선 2mile에 불과하며 상주인구도 없고 그 자체로 독자적 경제생활을 가질 수 없는 섬들이다. (「대륙붕 경계에 관한 조사연구」, 1971년, 어학기술처, pp. 15-17 참조).

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⁶⁶⁾ 협약 제280조는 대륙붕 경계분쟁 해결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해양법협약이 발효된 후 또는 그 이전에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한 국가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 현 관습국제법 법칙에 의한다 하더라도 국제협정을 통하여 대륙붕분쟁을 해결한 주권국가의 행위를 금하고는 있지않다. 또한 해저관할경계선과 어업관할경계선을 분리시킨 예로서는 오스트레일리아와 파푸아 뉴기니아간의 「주권 및 해양경계에 관한 조약」이 있다. 즉 파푸아 뉴기니아의 일부 해저관할수역의 상부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어업관할수역이 놓인다. 이처럼 경제수역의 경계선과 대륙붕의 경계선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중국과의 관계

우리는 중간선원칙을 기준으로 황해남부와 동지나해에서 중국을 향하여 대륙붕선언의 구획을 정하고 있다. 중국은 전술한 바와 같이 200해리 수역을 지지하고는 있으나 아직 이를 선언하고 있지 않으며 중간선원칙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제 중국과는 외교관계를 정식적으로 체결함에 따라 앞으로 중국은 해양경계에 관한 문제를 교섭해 올 입장을 보인다면 우리는 지리적 관점에서 중간선원칙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양국의 경제수역 경계획정에서 고려해야 할 관련상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당해지역의 지리적 상황을 보면 대 우리와 중국이 대향하는 부분의 해안선은 중국보다는 우리쪽이 굴곡이 더 많아 해안선의 길이가 더 길다. 우리는 이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겠으나 이같은 해안선의 굴곡은 직선기선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⁶⁷⁾ 또 지질학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황해의 해저지형과 지질구조가 그

들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는 이같은 지질적 구조라는 면은 고려되지 않게 되는 것이 국제법상 확인된 일반원칙이라 하겠다.

또한 도서문제와 안전보장적 요인을 살펴볼 때 양측 연안에는 많은 섬들이 있고 특히 우리측 서해연안에는 수많은 섬들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영해 내측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직선기준선제도에 흡수되어 버릴 수 있다. 또한 중국은 1950년 군사경계수역(Military Warning Zone), 군사항행수역(Military Navigation Zone), 군사작전수역(Military Operation Zone)⁶⁸⁾이라는 것을 선포한 바 있으나 그 범위로 보아서 우리와의 경제수역 경계획정에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동지나해의 공해상에 있는 중국의 7개 어업수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수역은 경제수역이나 어업수역의 선언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므로 관습국제법 법칙에 반한다고 하겠다.⁶⁹⁾ 한편 동 수역의 서쪽 한계는 앞으로 경제수역 선포시 양국간의 중간선과 일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중국어업협정의 일부 어업규제선(600마력 규제선과 저인망 제1보호구)이 양국간의 중간선을 부분적으로 침범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데 이는 한·일·중 3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겠지만 중간선에 의해서 한국의 정당한 권리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와 중국간의 중간선은 양국의 영해측정기선으로부터 등거리에 있는 선이 되어야 하며 만일 중간선을 중심으로 양측 해저에 걸쳐 석유 또는 천연가스와 같은 광상이 있는 경우에는 양측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공동개발이 바람직하다.⁷⁰⁾

우리나라의 서해 경제수역 기선은 최외단 섬인 백령도와 소청도가 대표적으로 한·중국간의 경제수역 기선은 우리측의 백령도·소청도·소흑산

66) Chung-il Chee(1979), pp. 35-37.

67) 김찬규(1980), p. 227.

68) 이들 수역에 관한 상세한 것은 Choon-ho Park(1979), pp. 124-126 참조. 참고로 중국은 1958년 9월 4일 12해리 영해를 선언하였다.

69) Chung-il Chee(1979), p. 40.

70) 김찬규(1980), p. 229.

도·마라도이며 중국측은 장문도(Sumon Tao)· 탑연도(Taben Tao)·여산(Sheshan)·천리탑(Chienilyem)과 동도(Tung Tao)이다. 우리나라 섬은 자연도의 법적성질을 완전히 구비한 유인도이나 중국측 섬은 토착한 도민은 없고 등대시설만이 있는 무인도에 불과하다.

4. 북한과의 관계

북한의 중간선원칙을 지지하고 있고 우리와 북한은 인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양자간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등거리선이라 하겠다.

그런데 실례로 북한과의 경계획정에서 두가지 곤란한 문제가 야기된다. 첫째, 북한의 경계수역의 내용이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또한 우리와 북한과의 협정이 미약한 관계로 양자간에 경계획정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둘째 북한과의 경계획정에서 중간선원칙을 사용하는 한국이 양자간의 경계획정으로 한반도의 영원한 분단을 기도하고 있다는 북한의 선전공세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우리 영토임⁷¹⁾에도 불구하고 새삼 해양 경계선을 그어야 하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북한에는 하나의 “사실상의 정권(de facto regime)”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의 관할권이 북한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수역을 설정하려 할 때 북한과의 경계획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북한의 선전공세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될 때까지 잠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⁷²⁾

북한이 1977년 경계수역과 해상군사경계선을 설정하면서 동해에서는 군사분계선이 끝나는 곳에서

위선을 그어 그 경계선으로 하고 있고, 서해에서는 “200해리를 그을 수 없는 수역에서는 바다의 중간선까지”를 그들의 경계수역으로 하고 해상군사경계선의 경우는 경계수역을 그 범위로 한다고 말했을 뿐 남북간의 경계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을 이미 밝혔다. 이는 서해 5도와 관련된 여러가지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를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한편 북한은 서해 5도 수역이 자기네들의 영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⁷³⁾ 한국 휴전협정은 서해 5도의 법적 지위⁷⁴⁾를 정하고 있으나 관할수역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뒤늦게나마 우리측에서는 협정발효 직후 1953년 8월 5개도서와 북한 본토와의 중간해협에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이라는 중간선을 설정하여 북한측에 공식통고하고 이를 우리 해군 및 어로활동의 경계선으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남북한은 대체로 NLL선은 침범하고 있지 않다. 이 NLL은 남해쪽 군사분계선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하여 서해 5도와 북한 본토와의 중간선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서해 5도 중 최북단에 있는 백령도를 우회하고 있다. NLL이 비록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이지만 30여년 동안 일관성있게 그리고 실효성 있게 실천되었으며 북한에 의해서도 항의된 바 없고 그것은 이제 휴전협정의 일부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지므로⁷⁵⁾ 남북간에 관계에 있어서 휴전협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때 서해에서는 NLL이 바로 해상경계가 될 것이며 문제가 되는 것은 NLL서측에 있어서의 경계인데 이는 북한과 협의하여 정해야 할 것이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71)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2) Choung-il Chee(1979), pp. 28~29.

73) 박종성(1978 b), “백령도의 관할수역,” 「고시연구」, 통권 제57권, p. 127.

74) 1953년 7월 27일 10시 판문점에서 서명 동일 22시 발효된 한국휴전협정은 38선을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로 대치하였으며, 서해에서는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도서 중에서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및 우도의 5도서군과 경계선이 남에 있는 모든 도서는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둔다고 동협정 제2조 13항(다)목에 규정하고 있다. 이때부터 서해 5도라는 용어가 생겼다. 서해5도의 법적지위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는 다음 논문을 참조.

김명기(1978), “서해5도서의 법적 지위,” 「국제법학회논총」, 통권 제43, 44호 pp. 323~337; 박종성(1979), “백령도 및 서해5도의 관할수역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논문집, 제13집.

75) 김찬규(1980), p. 293; 동 지, 김명기(1978), pp. 336~337.

에는 등거리선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동해에서도 북한과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겠으나 북한이 설정해 놓은 위도의 경계선을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5. 러시아(구소련)와의 관계

우리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함에 있어서 러시아와의 경계획정에 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수역을 설정·선포할 경우 우리의 경제수역내에서 러시아의 군용항공기 및 군용선박의 활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우리는 이들의 항행 및 상공비행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미리 검토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의 타국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UN해양법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모든 국가는 연안국이나 내륙국에 관계없이 본 협약의 관계규정에 따라, 공해에 관한 규정에서와 같은 항행, 상공비행 및 해저전선과 관선부설의 자유와 선박, 항공기, 해저전선과 관선의 운용에 관련된 것과 같은, 본 협약의 다른 규정과 양립하는 위의 각종 자유와 관련된 기타 국제법으로 적법한 해양의 사용을 향유한다. 그러나 배타적 경제수역내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있어서 국가들은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정당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본 협약 및 관련 국제법규칙에 따라 연안국이 채택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경제수역내에서 일지라도 군사적 동기와 관련된 각종 군사훈련 등의 행위에 관해서는 연안국이 국제법규칙에 의거하여 정한 관계국내법에 따라 일관성 있는 주권통제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최근에 러시아가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키며 그동안 동해상에 은밀히 상당한 양의 핵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등 심각한 환경생태계의 파괴행위를 자행해 왔음이 한 환경단체에 의해 적발되어 밝혀졌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무분별한 투기행위는 명백한 국제법상의 범법행위임에 틀림없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수역내에서라 할지라도 우리와 밀접한 주변환경인 동해상에서 세계적 및 지역적인 철저한

동조체제를 유지하여 해양환경을 보호·보존해야만 할 것이다. 더우기 UN해양법협약 중 투기에 의한 오염에 관한 조항에서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대한 각종 투기물의 투기는 그들의 지리적 상황을 이유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들과 이러한 투기에 관한 정당한 고려를 한 후, 이러한 투기를 허용, 규제 및 통제할 권리를 갖는 연안국의 명시적 사전승인없이는 수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명백한 국제법규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주변의 해양환경을 보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주변국가들과의 긴밀한 지역적 협력체제를 구축·유지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VI. 결 론

1982년에 채택된 「바다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UN해양법협약은 해양에 대한 국가의 관할권을 확장하여 “좁은 영해와 넓은 공해”라는 구도에 입각한 종래의 해양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대륙붕의 확장과 경제수역의 제도화에 따른 이러한 변화는 해양에 대한 국가의 관할권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 수역의 경계획정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시아는 해양의 지리적·지형학적 복잡성과 함께 국가간의 이념의 차이로 해양문제에 관한 국가간의 합의가 가장 어려운 곳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세계적인 화해분위기에 따른 중국·러시아(구소련)와의 수교 등과 같은 주변정세의 변화와 해양자원개발의 현실적 중요성은 그동안 관계가 소원했던 주변국가들과의 해양관할권 문제에 관한 현실적인 협상(Compromise)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UN해양법협약에서 명백한 법제도로 확립되었고 오늘날 세계적으로 국가간의 관행으로써 성립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제도는 우리나라가 위치한 동북아지역에서도 이제 현안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해역인 황·동지나해가 대부분 주변국들간의 천해의 공유대륙붕으로 연결되어 있

지만, 경제수역제도는 이 해역의 대륙붕은 물론 상부수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변국들간의 보다 포괄적, 현실적, 합리적인 분쟁해결의 전거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반도 주변해역은 주변국들로 둘러쌓인 조류의 흐름이 강한 반체쇄해이고 또한 대형선박의 항해가 빈번한 곳이기 때문에, 일단 선박의 충돌, 좌초 등과 같은 해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변국들에게 치명적인 오염피해를 가져다줄 소지를 안고 있다. 더우기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의 어업자본이 점점 고갈되가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우리 주변국가인 일본, 중국, 러시아(구소련)의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로 인해 우리나라의 어업자본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우리도 주변해역에 대해 경제수역 설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한국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를 위해서는 주변국들과의 분쟁을 피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이득을 가져다 주는 최상의 방책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 하겠다. 따라서 이 해역에서 강경 일변도의 대외정책은 가급적 자제하고 어로지도, 해양오염의 규제, 점진적인 자원탐사, 철저한 해양경비 등, 실질적 관할능력을 보증하는 첨단장비, 인력, 예산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이 보장되어야만 할 것이다.⁷⁶⁾

한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근원적 현안문제 중 중요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간 새로운 어업협정의 체결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포함한 동도, 조도, 남녀군도 등과 같은 우리 주변해역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서의 지위에 관한 현실적인 타결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각종 해난사고의 방지, 해양오염방지 및 사후대책을 위한 주변국들과의 지역적 협력체제(SAR 등)을 구축하여야 하겠다.

넷째, 최근에 우리와 국교수립을 맺은 중국, 러

시아(구소련)와의 현실적인 해양관할권이 타결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개방화시대에 부합하는 북한과의 휴전 협정 체제를 개선해야 하겠다.

여섯째, 대 외교관계의 개방화와 병행하여 주변 해역에서의 해상방위력을 증강하고 철저한 경계태세를 유지하여야 하겠다.

일곱째, 주변해역(특히 동해)에서 관련 당사국들의 핵물질 무단투기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방지를 위한 확고한 지역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김달중, *한국과 해로안보*, 서울 : 법문사, 1988.
- 2) 김문달, *국제법*, 서울 : 법문사, 1988.
- 3) 김영구, *현대해양법론*, 서울 : 아세아사, 1988.
- 4) 박종성, *한국의 영해*, 서울 : 법문사, 1985.
- 5) 박춘호·유병화, *해양법*, 서울 : 민음사, 1986.
- 6) 유병화, *국제법 (I, II)*, 서울 : 법문사, 1992.
- 7) 유병화, *국제법연습*, 서울 : 법문사, 1984.
- 8) 장효상, *현대국제법*, 서울 : 박영사, 1988.
- 9) 김명기, “서해5도의 법적 지위,” *국제법학회 논총* 제43, 44호, 1978.
- 10) 김정건, “한국과 북한의 해양제도에 관한 소고,” *연세행정논총* 제7집, 서울 : 연세대학교, 1980.
- 11) 박종성, “섬의 제도,” *월간고시* 통권 제46호, 1977.
- 12) 박종성, “경제수역기선으로서의 독도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통권 제43, 44호, 1978.
- 13) 이윤철, “한반도 주변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14) 이서항, “한일어업협정 20년의 재평가-신 해양 법학립과 관련하여,” *국제법학회논총*, 통권 제58호, 1985.
- 15) 지정일, “한·일·미의 어업관계의 쟁점 및 분

76) 김영구(1988), *현대해양법론*, 서울 : 아세아사, pp. 336-337.

- 쟁해 결책, 「국제법 학회논총」 통권 제43,44호, 1978.
- 16) Churchill R.R. and A.V. Rowe, *The Law of the Sea*, Manchester : Manchesyer University, 1983.
 - 17) Ma, Ying-jeou, *Legal Problems of Seabed Boundary Delimitation in the East China Sea*, Baltimore : Occasional Papers Reprints Series in Contemporary Asian Studies Inc., 1984.
 - 18) D.P. O' Connell,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 I, II Oxford : Clarenden Press, 1982 & 1984.
 - 19) E.D. Brown, *The Legal Regime of Hydrospace*, London : Stevens & Sons, 1971.
 - 20) Yagota, S.P., *Maritime Boundary*, Dordrecht/Boston/Lancaster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5.
 - 21) Kim Jung-Gun, "Reflections on the Attitude of North Korea toward the Law of the Sea," *Asian Perspective*, Vol. 9, 1985.
 - 22) Ouchi Kazuomi, "A Perspective on Japan's Struggle for its Traditional Rights on the Oceans," *ODIL*, Vol. 5, 1978.
 - 23) Park Choon-Ho, "The sino-Japanese-Korean Sea Resources Controversy and Hypothesis of 200-mile Economic Zone,"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16, 1975.
 - 24) Park Choon-Ho, *East Asia and the Law of the Sea*, 2nd Ed.,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85.